

#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10월 15일 이덕현 의원 외 20명
- 나. 회부일자 : 2002년 10월 15일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 - 제10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(2002년 10월 15일) 상정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의원)

### 제안이유

- 부천시주차장조례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면 세대당 0.7대로 되어 있어, 이 기준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주택가내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.
-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지역의 주차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함

### 주요골자

-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.7대에서 1.0대로 상향조정(제17조 별표2의 제4호)

### 3. 주요질의 및 답변

질의	답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현행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기준이 세대당 0.7대에서 조례를 개정 1대로 상향 조정 하려는 이유와 근거는?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근 1년사이 우리시는 다세대주택의 엄청난 건축으로 이면도로 주차난이 더욱 심화된 상태로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완화 시키는 차원에서 부설주차장 기준을 강화코자 하는 것이며, 이미 서울시와 인천시는 세대당 1대로 상향조정하여 시행중에 있음.</li>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세대당 주차면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?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서울시와 비교해 볼 때 서울시도 현재 세대당 1대로 상향조정 하고 있어 우리시도 1대로 조정하는 것 이 타당 하다고 보며, 1대로 조정 후 효과가 없을 경우 더욱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.</li></ul>

### 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없 음  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### 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 음

### 7. 기타필요한 사항

- 없 음

#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45호
의 결 년 월 일	2002. 10. 17 (제100회)

제출년월일 : 2002. 10. 15

제 출 자 : 이덕현 의원 외 20인

## 제안이유

- 부천시주차장조례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면 세대당 0.7대로 되어 있어, 이 기준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주택가내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.
-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지역의 주차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함.

## 주요골자

-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.7대에서 1.0대로 상향 조정(제17조 별표2의 제4호)

## 개정조례(안) : 불임

##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사항 없음.

## 기타참고사항 : 불임

부천시조례 제 호

##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제4호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의 설치기준란중 “세대당 0.7대”를 각각 “세대당 1.0대”로 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,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| 제17조 관련)

### 부설주차장 설치기준

현 행		개 정 안	
설 물	설 치 기 준	시 설 물	설 치 기 준
	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주택, 다세대주택	시설면적 87m <sup>2</sup> 초과 134m <sup>2</sup> 이하는 1대, 시설면적 134m <sup>2</sup> 초과의 경우는 1대에 134m <sup>2</sup> 를 초과하는 87m <sup>2</sup> 당 1대를 더한 대수. 다만, 주차대수가 세대당 0.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.7대 이상	4.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	----- ----- ----- ----- 세대당 ----- 세대당 --
	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(생략)	6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(생략)	7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